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 제4장 제11절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  
 제71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 
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의 소관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승계한다.

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”로 하고, 동조제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한다.

②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”로 하고, 동조제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하며, 제4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하고, 제8조제2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장”으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 제7조 중 “면제하거나”를 “면제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(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

자인 시설에 한한다)

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 ⑦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
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회의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수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5항 본문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동항 단서 중 ‘제3항 및 제4항’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동조제6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7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”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“를 ”다음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금수공사비의 50%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,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“로 하며, 동조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
2.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별표 3」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금수관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
3.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